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규정 번호	4-1-3
제정 일자	2011. 12. 19.
개정 일자	2024.4.15.
책임부서/팀·계	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 제3장 제3절에 의한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및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8., 2019.11.14.>

제2조(명칭) <조항삭제> 명칭 관련 조항을 제1조에 통합 <개정 2018.2.8.>

제3조(기능)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사항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2.8., 2019.11.14.>

제4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설립이념의 고양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종교인, 외부인사)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2.26., 2023. 3. 30.>

제5조(자격 및 정수) ① 평의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그 자격기준과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인 : 보직교원 및 전임교원 이상
2. 직원 4인 : 직원 4인중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신안산대학교지부의 노동조합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3.4.>
3. 조교 1인 <신설 2021.02.26.>
4. 학생 2인 : 재학생 대표 <개정 2023.3.30.>
5. 동문 1인 : 동문 대표
6. 설립이념 고양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인<개정 2021.02.26.>

②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8.>

제6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학생 평의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제7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④ 의장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1.9.16.>

제8조(회의소집) ① 평의원회 정기회의는 매학기 1월~2월과 7월~8월에 개최한다.

② 평의원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회의의 안건을 정하여 대학의 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 의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평의원회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개정 2018.2.8.>

③ 평의원회 의장은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2019.11.14.>

제11조(평의원의 의무) ①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의원은 당해 대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않고서는 대학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재정) ① 학교의 장은 평의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외부에서 위촉된 의원에게는 회의비 지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제13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신안산대학교의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및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을 준용하되,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